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 ⁰⁰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17. 12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기한을 변경하고 변경된 기한 까지 지역체육발전에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안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안 제10조(기금의 설치) 제3항 개정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기한을 변경
(2017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)

나. 안 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제1항 개정

-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안 추가

다. 안 제1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개정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관계규정에 추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9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9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입법예고 : 2017. 10. 18. ~ 11. 7.(20일간)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호를 신설한다.

3. 기금성과분석안
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9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을 신설한다.

- ① 본 조례 내용 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의한다.
- 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기금의 설치) ① ~ ② (생략) ③ ----- <u>2017년 12월 31일</u>까지 로 한다._</p> <p>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 1. ~ 2.(생략) <u>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</u> <u>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<u><신설></u></p> <p>제1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 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 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 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. ② 제1항의 규정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<u>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</u>을 준용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기금의 설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 <p>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 1. ~ 2.(생략) <u>3. 기금성과분석안</u> <u>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</u> <u>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제1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본 조례 내용 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」에 의한다. 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보관 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 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 칙」을 준용한다.</p>

참고 1

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9조(기금의 설치 등) ①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, 체육인의 복지 향상, 체육단체 육성,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, 체육·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,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③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